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5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김영환 · 김태선 · 박홍배  
박용갑 · 박 정 · 서영교  
박은정 · 허 영 · 박상혁  
이재관 · 이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횡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한 경우: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를 “거짓으로”로, “경우”를 “경우: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해당 위반행위일 전 5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경우: 6개월간

나. 해당 위반행위일 전 5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1년간

3의2.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는 날까지

다만, 제9항에 따른 추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의 사용이 제한된 자에 대해서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정 사유가 발생한 <u>경우</u> &lt;<u>단</u> <u>서 신설</u>&gt;</p> <p>① ~ ② (생략)</p>	<p>-----<u>경우: 2년간. 다만, 제9항에 따른 추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로 한다.</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	--